

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66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04. 01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4. 08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4. 19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: 서도선)

가. 제정이유

- 고성군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성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, 적용 범위(안 제1조 ~ 제4조)
- 책무 및 안전관리계획(안 제5조 ~ 제6조)
- 안전점검과 안전조치(안 제7조 ~ 제8조)
- 안전관리 요원 및 지원요청(안 제9조 ~ 제10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공연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: 비예산
- 합 의
 - 성별영향평가: 복지지원과-8114(2024. 2. 23.)

○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4-274호
 - 가) 예고기간: 2024. 2. 19.~ 2024. 3. 11.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정제)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고성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 ~ 제2조)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3조)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으로, 관람객 1천명 이상 행사는 「공연법」 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1천명 미만의 행사의 경우 관계법규가 없어 이를 조례 제정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6조)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, 군이 주최·주관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해당 부서장은 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신고하도록 하고, 그 외 행사 주최·주관 기관 또는 단체는 물론 주관·주최가 불명확한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- (안 제7조 ~ 제8조)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, 안 제6조에서 규정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점검 실시 및 필요시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9조 ~ 제10조) 안전관리 요원, 지원요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옥외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4. 19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